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921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가. 지방공기업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면하는 등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이사장, 이사, 감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,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)

□ 참고자료

- 가. 실·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결과(6-8쪽)
- 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(6-9~12쪽)

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1회에 한하여"를 "1년을 단위로"로 한다.

- 제8조제1항 중 "임·면"을 "임면"으로, "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 위원회"를 "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 추천위원회"로 한다.
- 제9조제1항제2호 중 "예산부서의 장"을 "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이사(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 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-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- 제21조 제목 중 "계리"를 "회계처리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계리"를 각각 "회계처리"로 한다.
- 제27조 단서 중 "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"를 "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제33조 중 "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"을 "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3호·제17조제6호·제29조제2항제5호 중 "기타"를 각각 "그 밖에"로 한다.

제10조제1항·제16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"임·면"을 "임면"으로 한다.

제17조 각 호외의 부분·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·제2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·제2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	정	안
제5조(정관)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~12. (생략) 13.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 ② (생략)	제5조(정관) (1.~12. (현 13. <u>그</u> 밖에 ② (현행과	 행과 같음) <u> </u>	
제7조(임원) ① (생략) ②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			같음) 로
제8조(이사장) ①이사장은 시장이 <u>임·면</u> 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<u>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</u> 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.	<u>임면</u> 「지방공기	 업법 시행 ⁼	 성 <u>.</u> 제56조의3
②・③ (생략)	②・③ (현	행과 같음)	
제9조(이사)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, 정수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비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공단의 업무와 관계된 실·국장, 예산부서의 장, 공인회계사·교수 등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·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1. (현행과 2 2 기업 총괄 ②상임이사는 이사는 시장 비상임이사	같음) 말담당부서의 = 이사장이 당이 임면하다를 제외한 추천위원회여	

현 행	개	정	안	
제10조(감사) ①감사는 시장이 <u>임·면</u> 하며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 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10조(감사) ② (현행과		<u> </u>	임 <u>면</u>
제12조(이사회)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 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 상임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	 ② < <u>삭</u> 제>	(i) ①		
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제16조(직원의 임·면)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임·면한다. 제17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 1.~5. (생략)	 임면 제17조(사업) <u>각 호</u> 1.~5. (현행	 생과 같음)		
6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 7. (생략)	6. <u>그 밖에</u> 7. (현행과			

현 행	개	정	안
제21조(계리의 원칙) ①공단은 경영의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계리한다.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계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 제1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제17조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・2.(생략)②(생략) 제23조(손익금의 처리) ①공단은 매		그 	 -부담) ①
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 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 1.~3. (생략)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 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 1.~3. (생략) 제27조(시유재산의 사용) 공단이 시유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 가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	1.~3. (현행 ② 	H과 같음) H과 같음) H산의 사용	 <u>각 호</u> -

현 행	개	정	안
제29조(감독) ① (생략) ②공단은 다음 <u>각호</u> 의 사항에 대하 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1.~4. (생략) 5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등	1.~4. (현행고	<u>각 호</u> - } 같음)	
제33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실·과·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.			<u>「지방공무</u>

실 · 국별 협의와 의견수렴서

	검 토	구 분	n	무
	1. 관련법령	위배 여부 등 검토		0
검토사항	2. 행정규제 평가 등	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 의 심의		0
	3. 조직 및	예산 수반 협의		0
	4. 주민의 =	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		0
	5. 홍보계획	(보도자료) 반영 여부		0
	6. 기타 문>	제점		0
	실	·국별 의견수렴결과		
협의개요	실・국별	제출의견	검토	내용
 기 간 -2009.09.22 ~2009.10.12 내 용 - 의견수렴 		"해당없음"		
입법예고 결과				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제 출 의 견	조 치	내 용
 기 간 -2009.08.10 ~2009.08.19 방법 시보게재 		"해당없음"		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 □ 지방공기업법 ○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○ 제59조(임기 및 직무) 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○ 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"별 첨"
관련법규 정비대상	"해당사항 없음"
관련자료	"해당사항 없음"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□ 지방공기업법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 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-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
- 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
- 3.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
-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
- 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공사의 사장・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 - ③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- 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 - 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 - 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 - 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 -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 - 1. 경영전문가
 - 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 - 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 - 4. 공인회계사
 - 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④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.

-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-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